

2013년도 하반기 한국·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

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양국 간 공동산업연구를 증진하고자 “민간부문 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”을 통해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산업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에 2013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3년 7월 9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I 사업개요

1. 사업내용

- 첨단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

2. 지원분야

- 정보통신, 전기전자, 신소재, 화학, 환경, 나노, 기계, 생명공학,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간 공동개발과제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

II 지원내용

1. 신청자격(주관기관) : 양국 민간기업 공동주관

- 이스라엘 기업과 공동으로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함

2.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

지원유형	최대지원금 (양국지원금액 합계)	지원기간	과제내용
대형과제 (Full-Scale Project)	US \$ 1,000,000	3년 이내	사업화가 가능한 중장기 연구개발과제
소형과제 (Mini-Scale Project)	US \$ 100,000	1년 이내	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과제
타당성검토과제 (Feasibility Project)	US \$ 30,000	3개월 이내	기술적합성, 상품화 가능성 조사 과제

○ R&D연구개발비용 최대 100만불 지원 (양국 기업 합계)

- 양국 주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예산을 합산하여 제출함
 - 양국의 예산 비율은 최대 7:3 까지 인정 (한쪽 기업이 최소 30%의 예산 차지)
 - 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(대형과제에 한함)
- (3.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기준 참고)

3.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준

평가등급	A	B+	B	B-	C
최대지원금 (단위: 만불)	100	90	80	65	50

4. 제한조건

-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총괄책임자)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등)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, 금융기관 등이 신용거래 불량자(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)
-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'공동운영요령'상 지원제외, 사업계획서 반려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

5.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

- 과제 상업화 이후 매출 발생 시 연간 매출액의 최소 2.5%를 기술료로 상환하여 정부 출연금의 100%까지 상환
 - * 단, 관련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시 상환의무는 없음
 - * 기술료 조기 상환의 경우 최대 50% 감면혜택 부여

III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

1. 지원절차 및 일정

- 매년 1월말/7월말 대형과제 신규과제접수, 소형/타당성 과제는 연중 수시접수
- 양국 사무소에 동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양국에서 각각 평가한 후,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승인

- 이사회에서 승인된 과제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(40%)을 선지급하고, 중간평가 후 2차 지원금(30%), 최종평가 후 3차 지원금(30%)을 단계적으로 지급

구분	일정	비고
신규 사업 공고	'13. 7. 9	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
사업계획서 접수	'13. 8. 8	대형 (연2회) 소형, 타당성(연중 수시)
접수과제 사전검토	8월	사전지원제외대상 분류
과제 심층 평가	9월 ~ 11월	국가별 개별 평가 (현장실태조사, 평가위원회)
과제 선정(이사회)	12월	최종 심의
지원대상과제 확정 및 협약 체결	2014년 1월	한국기관↔이스라엘기관↔한이재단

2. 신청요령

가.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

- 양식교부 :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(www.koril.org)
 - 한국·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의 III. Proposal Preparation Guidelines의 내용 및 양식 참고 (다운로드 가능)
 - * 한이재단 홈페이지(www.koril.org) → KOREAN(한글홈페이지로 이동) → 사업소개 → KORIL Guidelines & Forms → 사업운영요령 → Handbook(6th Edition)
- 접 수 처 : 양국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
 - 양국기업이 공동으로 과제영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(워드 양식)
 -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
- 접수기간 : 2013년 8월 8일(목)까지 (대형과제)
 - 소형 및 타당성검토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
- 접수 및 문의처

전담기관	문의처
한국 본부 사무소	· 전화 : 02) 6009-8253 · 담당자: 최정인 연구원, ena@koril.org
이스라엘 사무소	· 전화 : +972-3-511-8183 · 담당자 : Ms. Deborah Schabes, Israel Manager dvora@matimop.org.il

나. 평가지표

- Capability of Company : 주관기관의 기술력, 적정시스템 및 장비 보유, 재정능력 등

- Technology : 개발기술의 혁신성, 연구수행 능력,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등
- Business Opportunities : 시장진입 가능성, 경쟁력 향상,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
- Benefit to both Economies :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발생가능성, 경제성 및 파급성 등

3. 근거법령 및 규정

가. 근거법령 : 「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정부간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 협정(2005.12, 발효)」

나. 관련규정

○ KORIL-RDF HANDBOOK (6th Edition) : 한국·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

* 상기 운영요령 외에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-35호)을 준용함

4. 유의사항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새로운 기술개발 없이 상대국 기업의 단순 용역(시험, 조립 등), 위탁과제 성격의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